

## 성경적 원리로서의 자산기반 복지

이 호 선\*

### 논문초록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의 자살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대표되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심리적 지지대를 구성하는 경제적 토대의 결핍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성경에서 제시하는 희년의 해방과 자산 회복은 미국의 공공토지공여법이 갖는 복지적 성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매우 강력하며 효율적인 사전적 복지 원리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자산 분급 복지 원리는 개인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높일 뿐 아니라, 정의감을 충족시켜 사회통합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존성 논란은 자산 복지의 틀을 초기 생애의 균등한 출발에 두고, 중기 이후에는 자기 책임으로 살게 함으로써 불식되며, 오히려 많은 구성원들을 사회경제활동에 끌어들이므로써 사회적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원의 경우 지금의 사후 소비적 지출 성격의 복지 비용의 일부만 전환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누수와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복지 낙인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도 자산복지의 장점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사후적 복지 정책은 언제든 표를 의식한 복지선심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과 경제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자산복지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일정하게 개인에게 지급됨으로써 즉흥적인 정책 시행의 위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 복지 원리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유용한 현실적 대안이다.

주제어: 성경적 복지, 자산, 희년, 사회적 정의, 사회통합.

---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유럽연합대학원(EUI) 객원교수  
2013년 11월 20일 접수, 12월 17일 최종수정, 12월 24일 게재확정

## I. 들어가며

2013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나온 뉴스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92세의 부친을 모시고 중학생 딸을 데리고 살던 오십대 중반의 한 가정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는 사연이었다. 부친이 하루 전에 사망하자 장례식을 치르는 대신 본인이 죽음을 택한 것이다. 15세인 그의 딸은 추석 하루 전에 줄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다.<sup>1)</sup> 안타까움으로 치자면 어디 비단 이 사건 뿐이겠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혼자 아니면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 중 여성의 자살율은 1위, 남성의 그것은 2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 역시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이호선, 2011a: 22).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뉴스 매체를 통해 접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병비관이나 생활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중복된 것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댈 곳이 없는 인생들의 마지막 선택이 자살이라는 극단이 된다. 세계적으로 수위를 다투는 이 암울한 죽음의 통계는 출산율에도 이어진다. 죽음을 택하는 구성원들이 많다는 것은 희망이 그 만큼 없다는 뜻이고, 그런 공동체 내에서 희망의 상징인 다음 세대의 생산을 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암울한 타이틀이 동시에 우리에게 따라 붙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OECD가 2010년 회원국들을

---

1) 이 사건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살복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전문을 인용한다. (2013년 9월) 18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모(56.무직)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딸(15)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집 안에는 최씨와 최씨의 아버지(92), 딸 등 3대가 모여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씨의 아버지도 안방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지병으로 하루 전에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장에는 ‘생활고로 힘들어 죽음을 택했다. 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다 총을 발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최씨의 아내는 지난해 치킨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안에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부인이 숨지자 가정형편이 매우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방에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버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3. 9.19. 기사. “일산서 50대 권총 자살, 명절에 중학생 딸만 남아”

<<http://news.donga.com/3/all/20130918/57723087/1>> 최종방문 2013. 11. 15.

포함하여 세계 주요 40개국의 출산율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율이 1.23명으로 떨어졌고<sup>2)</sup>, 2012년의 경우엔 1.3명으로 조금 그 비율이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는 있지만<sup>3)</sup>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희망이 없는 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딛고 설 경제적 토대가 없음이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는 끝없는 죽음의 행진과 출산 사보타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도를 넘어 존립을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가? 이를 단순히 개인의 삶의 의지의 박약이나, 생명경시의 풍조, 경제적 측면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패배의식이 특히 강한 민족적 정서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기엔 이 사회에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이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분석과 진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대량 생산 경제 하의 미국에는 한 공동체 안에 세 개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매일 같이 부가 창출되며 권력도 늘어나는 백성들이 사는 곳과, 정채된 수입과 증대되는 경제적 압박으로 매일을 쥐여 짜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마저도 따라가지 못해 완전히 뒤쳐진 백성들의 집단이 그 것이다. ....수입과 기회에 대한 불평등의 심화현상은 그 자체로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Burdenski & Dunson, 1999: 93)

이것은 미국을 향한 소리이지만, 그 대상을 우리나라로 바꾸어 놓으면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보다 높은 자살율과 낮은 출산율은 우리의 상황이 결코 낫지 않음을 보여준다. 만일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이 비정상적이며, 해결되어야 할 사회 병리 현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질문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실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

2) 파이낸셜 뉴스 2013. 2.28. 자 기사. “한국 주요 40개국 가운데 출산율 꼴찌” 최종방문 2013.11.15.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2270100247330014156&cDateYear=2013&cDateMonth=02&cDateDay=27](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2270100247330014156&cDateYear=2013&cDateMonth=02&cDateDay=27)>

3)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8](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8)> 최종방문 2013.11.18.

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 분께서 문제 삼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에 만족하고 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매 주일 공적 기도에서 빼 놓지 않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족한 것도 아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문제로,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우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대신, 교묘하게 다시 하나님께 공을 던지지는 않는다.

장로교 집안에서 자란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들려주는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들어보자.

“내가 기억하기로 그 기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억눌린 자와 불행한 자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우리 몫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Wolterstorff, 1981: 15)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월터스토프 교수의 경험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서 가장 많은 자선과 구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형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늘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남은 일꾼’들이 곳곳에서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그들로 인해 세상이 이만큼이나 유지되고, 덜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을 좁혀보자.

불행한 이웃들, 그 중에서도 자살로 내 몰리는 극빈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의 축복의 메시지와 거꾸로 다음 세대를 스스로 단절시켜 가는 이 현상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있는지, 그 답을 어떻게 현실에 제도화시킬 것인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돌이켜 본다면, 우리 여전히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들어주신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4)</sup>

4)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종들 중에서 악한 종으로 지목되어 쫓겨난 종은 받았던 달란트 하나를 그

물론 기독교인 학자들이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를 위한 사회적 행동을 기독교적 봉사로 이해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연구도 있었고(김은홍, 2008: 200),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대비하면서 사회 민주주의적 모형과 성경적 복지국가의 유사성을 찾기 위한 노력도 있는 등(김의명, 2012: 144) 다양한 시각에서 성경적인 복지를 다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복지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그 부수적 수단으로 설명하는데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신자들의 구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그치거나 개 교회의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제한시키고, 그것도 아니면 기존의 복지이론이나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작업들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노정하고 있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함을 감안할 때 복지에 대한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불거진 보수와 진보의 복지 논쟁의 한 복판에서 한국 교회가 대안을<sup>5)</sup> 제시하거나 복지담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었던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학문적 접근은 보다 담대하고 지혜롭게 세상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에 대한 시각을 성경에서 찾되 그 결과물은 세상에 구체적으로 던져져야 하고, 그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현대 신학의 비에는 거짓된 겸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학이 형이상학적 담론에 굴복한다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 인간 심리학, 초월적 철학과 같은 특정한 우상들의 신탁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존 밀뱅크의 질타는(Milbank, 1995: 1) 비단 신학이라는 학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할 각각의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비영리 부문에 다섯 가지 핵심 역할이 있다면서 1) 대중적 지지 확보, 2) 사회적 기업설립 및 문제 해결,

---

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윌터스토프 교수의 경험담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공을 도로 던지는 ‘이웃을 향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혜, 물질, 사회적 네트워크, 시간 등을 땅에 묻어 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5)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대안’이란 입법화가 바로 가능한, 그래서 공동체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가시적 정책의 결과물을 말한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종자돈 조달, 4)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책임 촉구, 5) 학술 연구(연구소 중심)를 꼽고 있다(Sachs, 2008: 367).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의 대안에서는 종교적(영적) 영역의 역할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세속 학자들의 시각을 냉정하게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sup>6)</sup> 그러나 진정한 사회개혁이 대중의 호소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엔 종교적 상상력과 감성이 있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회학자인 존 콜만은 미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윤리 속에 성경적 정신과 복음에 기초한 상상력과 서사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된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이 ‘연민이 있는 공정사회(compassionate just community)’를 향한 가장 강력한 미국적 외침들은 항상 공적으로(in public) 종교적 상상력과 감성에 의지하였었다고 한다(Coleman, 1982: 193).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야 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공동체 치유의 공간이며, 성경은 유일한 치료제라는 격려를 받게 된다. 복지 문제에 관하여도 그런가?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이 복지 문제를 포괄하는 원리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와 같이 도출된 원리들을 적용할 때 지금의 복지논란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제2장에서 첫 번째 주제를, 그리고 제3장에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 II. 성경적 복지 원리의 탐색

### 1. 왜 성경인가?

성경 속의 법 제도와 그 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들은 인간의 복지를 영적이면서 성스러운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보다도 더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한다

6) 위에서 본 월터스토프 교수의 경험담을 생각해 보라. 그 당시보다 지금의 미국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자기 책임을 주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Burnside, 2011: 236).<sup>7)</sup> 신명기 제14장과 제16장에 나오는 양식의 배분에 관한 제도들은 성경의 법률들이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제례상의 용어들 내지 제례적 장치를 적당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에서 이 제도적 장치들을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고 시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음”(Kawashima, 2003: 387)을 보여주고 있다. 성례는 사회적 문제들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들을 직면하고, 언급하며,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는 구약의 법률들 속에 있는 제도들이 사회 문제 깊숙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현대 사회에서나 동일하다는 걸 뜻한다. 여기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리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첫째, 성경적 복지에 관한 법 이념이 마르크스주의를 보수적으로 보이게 할 만큼 급진적 성격을 가졌다고 하여 이 원리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유물론적 신학에 경도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를 정의 담론에 묶어 둬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대변되는 지루한 논쟁을 벌이며 당장의 필요에 절박한 이들에게 눈감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 복지의 명령이 급진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시장 자본주의의 멘토로서의 역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선언과는 정반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단순한 생산과 생산을 위한 수단 간의 관계라는 물질적 요소에만 터 잡은 것이 아니라, 영적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Burdenski & Dunson, 1999: 93). 관계와 관계 사이는 진공 상태가 아닌 각종 문화, 정서, 가치, 역사성, 욕망, 경험 등이 공기 중에 어우러져 규정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간에 그 뿌리를 인간의 영적 속성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오염되고 있다면 일단 환기를 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없다. 모든 사물과 제도가 그렇듯 늘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없다. 시장경제란 정원과 같아서 시간이 가면 원치 않는 잡초와 잡목이 나고 자라게 마련이다. 그것들이 너무 무성해져서 정원으로로서의 모습이 없어지기 전에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 둘째, 성경적 복지법 이념이 단호하

7) “레위기 25장은 ‘자본론’을 순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더 이상 Morris, Keynes, 그리고 Beveridge가 아니라 레위기이다.” Will Hutton, *The Observer*, October 3, 1999. Burnside 위 책에서 재인용.

고 분명할 수록 현실감각은 반비례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복지 논쟁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복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통해 주어질 것이다. 셋째, 구약의 법들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구약의 율법들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성취된 신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폐지되거나 대체된 제도들이 있다.<sup>8)</sup> 구약의 제사법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약 상의 사회적 제도를 형성하는 법 규범과 원리는 그 구체적인 외피는 다를지언정 바닥에 있는 일관된 정신은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유인력과 같은 각종 자연의 법칙이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듯 사회의 법칙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허락하셨던 피조물의 선한 모습, 타락 이후에 들어온 죄의 본성에서 빚어지는 각종 심리적 현상(예컨대, 자기만족, 동정, 교만, 이기심, 비교와 질투, 이타심, 종족보존본능, 과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불안 등)과 이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사회관계를 적절히 감안하여 설계해 놓으셨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의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경제적, 산업적, 지리적, 정치적인 외적 환경의 차이는 구약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법 규범을 오늘날에 도외시해도 될 만큼 크지는 않다.<sup>9)</sup> 1990년대 초 제3세계의 빈국들의 국가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목표로 나와 많은 지지를 받았던

8)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마태복음 5:17).

9) 구약(舊約)은 우리 기준으로 “구(舊, old)”이고, 그 말의 뜻에서 ‘낡은, 묵은, 헌 것’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할지 모르나 시간을 펼쳐 놓으시고 늘 ‘오늘’이신 하나님 앞에는 의도적인 용도의 변경이 있을 뿐 시간이 작동하여 못쓰게 되는 일이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근의 것이 과거의 것보다 나은 것이라는 사고는 어떻게 보면 은연 중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도 모른다. 창조 신앙은 태초의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필요한 환경도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규범 및 규범의식까지 포함) 완벽하게 주셨음을 고백하지만, 진화론의 바탕에는 부족하게 출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역사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법 규범도 시간선의 끝자락에 있을 수록 ‘신상품(brand-new)’일 것이라는 사고 또한 진화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한다(전도서 1:9).



‘희년 2000(Jubilee 2000)’ 운동 등은 레위기 등 구약의 법 규범이 오늘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sup>10)</sup> 당시 재무장관으로서 이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배경에 장로교 목사 집안에서 자란 그의 신앙적 배경과 성경의 교훈이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고 한다(인디펜던트, 2005. 1. 15. 기사. Burnside, 2011: 221에서 재인용). 자본의 소유, 근로, 인센티브, 금융, 통화체제, 조세 및 복지와 같은 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규율하는 원리들은 단편적인 입법 기술의 문제로 해결될 수만은 없기에(Mills, 2000)<sup>11)</sup>, 진정한 사회적 개혁에 오래된 사고들이 통합 조정자로 새로 나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sup>12)</sup> 오래된 사고 그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그 본질을 망각하거나 오남용함으로써 스스로 거기에서 떠났거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한 비난을 그 쪽으로 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2. 절기와 추수성수법을 통해 본 성경적 복지

현대의 사회 복지의 대상들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돈, 생필품, 자산, 직업, 일, 교육, 의료, 자녀양육 및 교육, 명예 및 보상, 개인적 안전, 주택, 운송 및 이동, 여가 기회 등 그 필요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개인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다(Miller, 1999: 7). 이런 필요의 다양성을 어떤 사람들은 복지의 일의적 정의를 부정하거나, 심지어 복지 자체의 필요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바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10) 희년 2000은 1990년대 초 Martin Dent 라는 영국의 Keele 대학의 은퇴한 정치학 교수가 레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00년까지 부국들이 가난한 제3국들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임으로써 많은 반향을 얻었던 사회운동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http://en.wikipedia.org/wiki/Jubilee\\_2000](http://en.wikipedia.org/wiki/Jubilee_2000)> 참조.

11) Paul Mills(2000). “The divine economy” Cambridge Papers(9)4. 이 글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다룬 받을 수 있음. <<http://www.jubilee-centre.org/document.php?id=30>> 최종 검색 2013. 11. 10.

12) 복지를 비롯하여 각종 우리 사회 경제적 정책들이 매우 지엽적이며 일관성, 체계성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원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신 그 때 그 때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면 그만이라는 관료들과 입법자들의 안이한 타성, 국민의 무관심이 어우러진데 있지 않은가 싶다.

“기본적 필요가 객관적이란 말은 기만적이다. 여러 문화적 상황에서 그럴듯한 (객관적) 필요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도덕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뿐이다. 비록 도덕적 전통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기본적 필요의 목록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그 기초적 필요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우선순위에 합의하는 방법이란 없다.”(Gray, 1983: 182. Miller, 1999: 203에서 재인용).

또 나아가 같은 필요라도 긴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국 필요는 가변적이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는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회적 정의를 말할 때에도 실제로 가리키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Hartropp, 2010: 76). 복지의 대상과 그 실행방식을 둘러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흔한 것은 금전적 자원의 이동을 포함하는 복지 정책들로서 예컨대, 복지라는 말 자체를 가난한 자에 대한 금전의 교부와 동의어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금전적인 사회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그 유형은 1) 정신적 및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소득 지원, 2) 퇴직자들을 상대로 자산과 소득에 기초한 빈곤수당의 지급, 3)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자녀 양육 및 교육 수당 지급 등 다양하고, 수급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기본적 필요를 수급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재정적으로 지원받는데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는 보조 방식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 및 양식 쿠폰 등과 같이 지원과 수급자의 일정한 의무를 연계시키는 것이다(Badie, 2011: 2744). 복지에 조세, 연금, 고용, 건강보험, 사회적 지원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복지국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러한 복지 실현을 국가가 어느 정도로 담당하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위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기도 한다(김의명, 2012: 16). 그러나 복지는 담론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오는 현실이다. 복지에서의 필요의 다양성에 집착하면서 공동체의 복지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주로 상대주의적 세계관이다. 필요의 다양성 속에 복지의 필요를 숨기려는 이들의 시도는 정의(正義)를 어떻게 정의(定義)하느냐를 둘러싼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해묵은 논쟁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해서는 의식주라는 공통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미국 대법원 판사인 포터 스투어트(Potter Stewart)의 “난 포르노가 무엇인지 더 이상 정의를 내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보게 되면 포르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유명한 경구를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sup>13)</sup>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의내리기 보다는 최저 빈곤선 밖으로 밀려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빠를 것이다. 맨 처음에 보았던 비극적인 사건을 보자. 추석 전날 15세 딸을 놔두고 자살한 가장에게 만일이 의식주의 최소한이 보장되어 있었다라든가 그런 선택을 하였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의식주(衣食住)중에서도 최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식(食)’이다. 그 결핍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복지는 ‘먹는데서’ 시작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십일조를 즐기도록 하는 법률과 초막절 기념 의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sup>14)</sup> 이곳들은 성소로서 이동식 성막이나 성전을 말한다. 이 앞에서 이뤄지는 먹는 행사에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 복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뤄지는 것이다(Burnside, 2011: 235).

십일조에 관한 법률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생산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자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신명기 14장 27절은 자산을 가진 자들이 내놓은 수확한 농산물의 1/10을 레위인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4장 28-29절은 3년 마다 한번 씩 거둔 십일조는 “나그네, 고아 및 과부”의 몫으로 함으로써 수혜대상을 더 확장시키고 있다.<sup>15)</sup>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중의 하나이므로 다른 열 한 지파에서 매년 1/10씩 거둬 준다면 생계가 가능할 것이었다. 3년 마다 따로 떼어 성 중에 저축해 놓는 십일조로는 단순 하게 계산하면 공동체 구성원의 3.3퍼센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떼어 놓는 3년째의 십일조는 “성물(sacred portion)”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sup>16)</sup>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대충 남은 것들을 주는 것이

13) 하늘 같은 사람은 무엇이 정의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의를 본다면 무엇이 부정의인지는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 정의를 둘러싼 상대론자에 대한 반박으로 스투어트 판사의 말을 차용한다. Hahnel, 2005: 131

14)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신 14: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신 16:16)로 기록하고 있다.

15)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14:27-29).

16) “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구별해 놓은 것이어야 한다. 그 십일조 구분의 행위는 제사에 쓰이는 성물을 예비하는 것과 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말해야 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신 26:14)

왜 복지에 쓰이는 재원을 성물로 표현하였을까? 아마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 25:40)이고,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마 25:45)이라는 예수의 말씀 속에 이에 대한 답이 숨어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사회적 복지의 거룩한 속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복지법이 갖는 거룩함은 다양한 안식 제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안식제도는 모두 최초의 거룩한 안식, 즉 하나님 창조 사역 후에 이어진 안식과 연계되어 있다(Burnside, 2011: 235). 또한 이 말씀 중에는 사회복지의 재원은 미리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암시되어 있다. 즉흥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원 문제에 부딪치면 금방 포기하고 마는 “일단 지르기”식의 복지는 성경적 복지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아 둔 곡식의 분배 외에 뒤에서 보듯이 이삭 줍기, 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절기에서의 식사 초대 등의 기회가 주어졌다.

매년 이뤄지는 초막절에서는 취약한 계층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sup>17)</sup> 그런데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은 아무 곳에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신 26:13).

- 17)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거행되도록 되어 있다(신 16:15). 이는 각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양식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십일조와는 달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막절 준수에 관한 신명기 16장의 법률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취약 계층들을 더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당시의 교통 사정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그러한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절기가 이행되는 곳까지 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Bennett, 2002: 118). 그러나 이런 해석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도 거기까지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 버려두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함께 즐기라는 의무 속에는 그 축제의 장소까지 동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도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urnside, 2011: 235).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공동체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내 동네에서부터 이웃의 약자들과 동행하고, 그 기간 동안 같이 즐기며, 같이 돌아오는 전 여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복지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들에게 베푸는 후함이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목적이 고상하고 바를 때라야만 미덕으로 간주된다고 한다.<sup>18)</sup> 이를 공동체 차원으로 승격시키면 공동체의 후함, 즉 복지가 미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정이나 우월감을 충족하는 시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 명절의 복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미덕을 숨겨 놓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수혜대상으로 하여금 자존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정의(justice)’보다도 ‘정의롭다는 느낌(justice feeling)’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건강한 작동에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물리적 차별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식적 평등이 이뤄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정체감에 대한 가치 비하가 전달될 때는 불평등 지수가 높아짐을 보여준다(Skita & Crosby, 2003: 282-5). 같

---

즐거워할지니라” (신 16:14-15)

18) “후하다는 것은 다른 미덕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상하고 바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반기에 적절한 분량을, 적당한 때에 주는 것이다...이런 후함의 미덕 속에 기쁨이 있고, 변민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Aristotle, *Ethics*, 1120a9-a35: 80; Alexander, 2010: 19에서 재인용

은 귀속감을 공유할 때 심리적 차별이 거세되는 것이다(이호선, 2011b: 921).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무엇이건 그 힘대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뵈도록 하고 있었다.<sup>19)</sup> 고아와 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형편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본인들에게 이 의무를 면해주는 것은 당장에는 편하겠지만, 과연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sup>20)</sup>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한 인간의 자기표현의 최소한으로서, 단순한 육체적, 경제적 불편의 가중을 상쇄하고도 남는 귀속감의 확인이고, 아울러 자존감의 표현이다. 이것은 과부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과부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명절에 출석의 의무는 없었으나 그녀들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엔 그곳으로 데려갔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교과서나 선생보다 매년 세 번씩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산 교육으로서 중요했다. 가난이 결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가치마저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확인은 장래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었다. 이들이 초막절을 비롯한 절기에 참여하는 여정이 힘들수록 그 보람도 더 컸을 것이며, 의미도 남달랐을 것이다. 더구나 오고 가는 길에서, 머무는 동안 이웃들과 가졌던 교류는 그들이 매년 주기적으로나마 결코 외롭지 않음을 느끼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먹는 것을 통해 그 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sup>21)</sup>,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지를 실습하게 하신 것이다.

다음으로 레위기 19장<sup>22)</sup>, 신명기 23장<sup>23)</sup> 및 24장<sup>24)</sup>에 나오는 추수성수법(秋收聖守

19)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 16:16-7).

20) 초막절이 복지법의 관점에서는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편의 우선주의자들은 여전히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내가 (피곤해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창 25:32)라며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긴 에서를 떠올리게 한다.

21)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 14:23).

22)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10).

法, gleaning law)<sup>25)</sup>을 통해 성경적 복지의 원리를 보자.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양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수하면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추수하면서 미처 거두지 못하거나 흘린 것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더라도 이것을 도로 찾아서는 안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시작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일부 농작물들을 남겨 두라는 명령도 받고 있었다. 이집트 무덤에 있는 벽화들은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고대 양식 조달 체제 하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준다(Davis, 2008: 75).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곡물을 구하게 되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Davis, 2008: 125).

그런데 이 추수성수법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삭들을 문자 그대로 땅에 버려두는 것이다. 의도한 대로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들판에서 그냥 썩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투입과 산출의 과정에 비춰보면 효율이 떨어진다. 기왕 거두는 김에 알뜰하게 거둬서 직접 나눠주면 복지 효과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3년 마다 한번 씩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십일조도 저축하는데, 그 때 조금 더 내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삭을 남기는 사람은 누가 자신의 호의를 얻어가지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이삭을 주워가는 사람들 역시 주인이 자신들을 위해 일부러 이삭을 남긴 것인지 잘 모르는 까닭에 특별

23)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 23:24-5).

24)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 24:19).

25) ‘추수성수법(秋收聖守法)’이라는 용어는 ‘gleaning law’ 라는 용어를 나름대로 번역해 본 것이다. glean은 사전에서는 피동적으로 ‘이삭을 줍는다’ 내지는 그와 유사하게 ‘~을 조금씩 얻는다’는 뜻으로만 나와 있다. 이삭은 보통 거두는 사람에 의해 (부주의)로 남겨지는 것이지 일부러 만드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용법으로 굳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glean을 하나의 자동사로 본다면 ‘누군가 이삭을 만든다’는 직설적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신명기에서 이삭을 줍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만들어 지는 대상’이기도 한데, 특히 ‘이삭 만들기’는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복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gleaning’을 사전적 용법인 ‘이삭 줍기’는 물론 그 전 단계인 ‘이삭 만들기’라는 양자의 의미를 다 가진 것으로 쓸 뿐 아니라, 추수하는 농부들과 줍는 가난한 이들 모두가 수범자(受範者)라는 점에서 추수성수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히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이러한 단절은 주는 자의 심리적 만족을 저하시키고, 복지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추수성수법이 “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줍는 수고와 책임’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위에서 본 초막절의 자존감을 살리는 복지와의 맥락이 맞닿아 있다. 성경의 복지는 ‘먹여 주는 복지’, 다시 말해 의존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경적 복지는 뒤에서 보듯이 희년 제도에 가면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추수성수법은 또한 공동체가 복지를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정서적 기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조나단 번사이드는 추수성수법과 만나의 이야기를 연계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Burnside, 2011: 237-8). 들판에 남겨지는 먹을 것들은 광야 생활에서 들판에 생겨났던 만나를 연상케 한다. 만나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였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오버랩 되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워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들을 대신하고 있으며, 그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 양식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을 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거두다(laqaṭ)”<sup>26)</sup>라는 단어가 룻기 2장에 나오는 ‘이삭을 줍다’<sup>27)</sup>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만나의 이야기와 추수성수법을 연결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Burnside, 2011: 238). 만나의 이야기에서 이 동사가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양식을 얻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삭을 주워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농부들의 자비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Burnside, 2011: 238).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스라엘에 보관하도록 하여 다음 세대들이 온 민족이 그들의 생존을 여호와께 의존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요구하신다.<sup>28)</sup> 공동체가 기꺼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26) 예컨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출 16:16).

27)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룻 2:7).

28)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함이니라” (출 16:32).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과거의 경험, 그것도 어려웠던 그 순간을 오늘에 되살리는 동병상련의 연민에서 나온다. “과부가 과부의 사정을 알고, 홀아비가 홀아비 사정을 안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복지의 바탕이 되는 정서이자 문화를 대변하는 말이다. 복지 정책이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면 우리 공동체가 입었던 과거의 은혜를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집단적 경험이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한편 지금 농토를 가지고 경작하는 농부들, 다시 말해 지주들로 하여금 그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자각을 늘 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상의 대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항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은 토지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지금 농지를 갖고 생산하고 그 산출물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을 성경은 “이방인들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sup>29)</sup> 다시 말해 지금 이삭을 남기는 사람이나, 줍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처지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Burnside, 2011: 238). 만나에 대한 회상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모두 낮은 자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다(Burnside, 2011: 238).

또한 추수성수법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들판에 양식을 남겨 놓는 것은 축적과 정 반대의 행위이다. 쌓아놓지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라준다면 누가 쌓아두려 하겠는가. 우리는 이를 풍성함이라 부른다. 풍성이란 축적해 둔 것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필요가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추수성수법은 ‘풍성함’이 아닌 ‘풍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만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만큼 먹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파이’ 논쟁이다. 일각에서는 파이를 키워서 그 몫이 더 크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파이를 나누자고 주장한다. 성장이나 분배냐의 정책적 갈등이다. 복지와 분배가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복지와 관련하여 나오는 까닭에 우리는 분배에 복지를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전체적인 파이를 더 키우는 것은 확실히 복지의 양과 질을 높이며, 아주 이상적

29)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 25:23)

으로는 복지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이를 키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풍성함’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풍성함에 앞서야 할 것은 풍성함에 대한 신뢰이다. 이 신뢰가 있다면 이삭을 남기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오늘 쌓아 두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적은 신뢰의 반대말이다. 만나의 이야기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sup>30)</sup> 추수 성수법은 가난한 자들 역시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먹을 만큼 먹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도구를 이용하여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는 행위는 할 수 없었다(신 23:24). 축적은 “애굽적 질병”의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Davis, 2008: 70). 이스라엘의 노예 노동은 바로를 위한 축적용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되었었다.<sup>31)</sup> 만나를 축적하지 말도록 하신 뜻은 이스라엘의 장막은 창고가 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진(陣)은 바로의 국고(國庫) 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Davis, 2008: 76). 하나님의 복지가 배움과 풍성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바로의 경제학은 축적과 결핍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Burnside, 2011: 237). 공동체의 와해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외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더욱 암흑으로 빠져 들어 갈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책하고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sup>32)</sup> 복지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30)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 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출 16:16-20)

3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 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 1:11)

32) 이 말씀은 많이 오용되고, 곡해되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양식을 소비하는 계층이 우리는 누구인지 분명히 머리에 그려보아야 한다. 레위지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참담한 처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 3. 채무탕감, 희년의 자산회복과 성경적 복지

성경적 복지의 개념은 안식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이라면 안식은 이에 가장 부합한다. 안식일의 유래를 담고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든 걸 창조하였기에 안식일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모두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복지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오는 안식은 복지의 모형이자, 궁극이다. 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칠 년 중의 마지막 해와 칠 년의 일곱 번째 해로 확장된다. 칠 년째는 채무 면제가 되고, 그 칠년어 일곱 번째 되는 희년에는 사회,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진다. 사회적 자유는 신분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는 그 생계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자산에의 접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경적 복지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과 안식일의 확장 과정 속에 있는 법의 정신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의 안식일은 기억에서 출발한다.<sup>33)</sup> “너는 기억하라”(신 5:15)는 말씀은 안식의 바탕, 다시 말해 성경적 복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을 바닥에 깔고 있는지 한마디로 보여준다. 성경적 복지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 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있다. 이미 우리는 위에서 구약의 명절들과 십일조의 복지적 성격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본 바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요구받았다. 인간은 가능한 수치스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경험은 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번 씩 회상하라고 하신다. 온 민족이 종으로서, 2등 국민이자, 비주류로 열등한 취급을 받고 살았던 과거를 곱씹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 안식을 주어야 하는 의무로 구체화된다. 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시간

33)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5:12-15)

이자, 생리적으로 절대 필요한 쉼의 시간이다. 노동에 가혹하게 시달리던 노예 이스라엘이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쉼이었을 것이다. 이제 해방이 되고, 자신이 집안에 종을 두게 된 처지까지 이른 이스라엘은 과거를 기억하며 자신이 그렇게 갈구했던 안식을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는다. 그러면서 기본적 욕구에 있어서 인간은 물론 가축까지 동일하며, 지금의 각자의 신분이나 처지가 늘 정의로운 질서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나 종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런 자각은 개인과 공동체가 복지에 나서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추수성수법과 만나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집단적 경험과 회상이 안식일에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잡은 교만과 우월감, 축적의 욕구<sup>34)</sup>,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불신이 더 무성하게 자라기 전에 일주일에 한번 쉼을 가지게 함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연대의식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안식일은 칠 년마다 이뤄지는 채무 탕감으로 확장된다.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되는 순간이다.<sup>35)</sup> 채무를 탕감해 주는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에게는 채무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형태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소급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칙령을 반포하곤 했는데, 그 사례들은 기원전 2천년 경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서 풍부하게 확인되고 있다 (Westbrook, 1995: 154-5).<sup>36)</sup> 일반적인 안식년<sup>37)</sup>에서 이뤄지는 채무탕감과 희년의 채무탕감이 다른 점은 후자의 경우엔 빚을 갚기 위하여 종이 되었던 사람들, 이른바 채노(債奴)들에 대한 해방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7년 마다 한번 쉼을 탕감해 주는 제도는 이자에 대한 금지와 함께 개인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전적 복지 내지 선제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4) 일주일에 한번 종들까지 쉬게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덜 거둬들이는 셈이 된다. 안식일은 더 쌓고자 하는 마음을 7일마다 정기적으로 중단시킨다.

35)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신 15:1-2).

36) Burnside, 2011: 228에서 재인용

37) 일곱 번째 안식년인 희년과 구별되는 희년과 희년 사이의 여섯 번의 안식년을 말함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채무탕감에 소요되는 기간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기간보다 길다는 점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의하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기간은 7년이다.<sup>38)</sup> 이 기간은 기원전 약 1750년경에 시행되었다고 추정되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보다 더 길다. 위 법전의 117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의 아내나 혹은 자녀를 채무 이행을 위하여 팔거나 이행에 갈음하여 주었을 경우 그들은 매수인이나 채무 노역권을 행사하는 자의 집에서 3년을 봉사할 것이며, 4년째 되는 해에는 풀려나야만 한다.”(Roth, 1997: 103)

기원전 193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리핏 이쉬타르(Lipit-Ishtar)’ 고대 문서 14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신명기 말씀을 비교해 보자.

“만일 채노(債奴, debt slavery)가 그의 채노의 지위를 둘러싸고 그 분쟁이 있어 그 채주(債主)가 채노로부터 두 배의 보상을 받았음이 입증되면, 그 채노는 자유의 몸이 된다.”(Roth, 1997: 28-9)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신 15:18)

양자 모두 채노가 빚을 청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풀려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그 변제 금액도 다음과 같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가? 원본의 2배를 상환하면 자유가 선포되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데, 성경은 그 2배의 상환에 6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안식일의 확장인 안식년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Burnside, 2011: 229-30). 안식 규범의 일관성,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형식적 틀에 맞추기 위해 4년째이면 풀려나도 좋을 채노를, 굳이 7년째까지 붙잡아 두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보기는

38)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몰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출 2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신 15:12)

어렵다.

고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구약의 토지 가치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가치로 평가되었다. 채무자가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것은 통상 1년치의 수확물 가치일 것이고, 채권자도 그 이상은 빌려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대여 행위는 빌려주는 쪽에서도 불가능하거나(특히 곡식과 같은 현물일 경우 그러할 것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빌리는 쪽에서도 보통 생계를 위해서는 최대한 1년치 정도를 얻을 수 있다면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 이제 1년치 수확량에 해당하는 빚을 졌으나 갚지 못해 노동으로 대신 갚기 위해 채노가 된 그는 주인 집에 들어가 그 곳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통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주는 수입의 3배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적절한 생산성으로 본다. 수입의 1/3은 피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1/3은 일을 시킴으로 인해 추가되는 경비, 나머지 1/3이 고용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채노에게 적용하면 1년에 주인은 채노의 노동가치의 1/3을 순전히 회수하는 셈이 되어 6년이 되면 정확하게 2배를 거두게 된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자를 금지하고, 채무탕감과 희년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 친화적(pro-debtors)’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sup>40)</sup> 성경의 복지법은 개인의 책임을 매우 강조한다. 복지의 초점은 빌려주는데 있지, 그냥 주는데 있지 않다. 비록 마지막 해에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황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면제되고 종국적으로는 선물처럼 되겠지만, 그것이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다. 채무자에게는 분명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sup>41)</sup> 이는 가난한 자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그들로 하

39) 그의 전 노동가치, 즉 1년 수확에 기여하는 가치 중에서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1/3, 생계 외에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부수되는 각종 비용으로 1/3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채노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토지를 갖고 빚을 갚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간 수확량의 1/3 이상을 채무 이행으로 주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더구나 빚을 질 정도면 그의 살림살이나 농토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노동으로 갚을 수 있는 가치는 최대한 1/3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0)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동정으로 두둔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도(출 23:3) 우리는 공정하신 그 분의 속성을 볼 수 있다.

41) 비록 비유 중에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이스라엘의 채무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

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고무한다. 채무 탕감 제도는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채무탕감이고, 그 절정은 희년제도에서 드러난다.

희년에 관한 법은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나온다. 희년이 되면 채노들은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주인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채권자이기도 한 채주도 있지만 채권과 관련 없이 채노의 지위를 사들인 주인도 있을 것이다.<sup>42)</sup> 고대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부류의 노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 채주와 이스라엘인 채노의 관계이다. 여기엔 빚을 갚기 위해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출 22:1) 종이 된 사람도 있다. 이들 노예는 그 노동의 가치가 채무 이행의 급부가 되며 최대한 7년간 노동으로 갚아야 한다(신 15:1-3).<sup>43)</sup>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영구히 종이 된 사람들이다(레 25:4-46). 이스라엘인 채노의 경우와 달리 이 노예의 신분은 영구적이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채주이고 이스라엘인이 채노인 경우를 들 수 있는데(레 25:47-54),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노예의 형태는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일시적 성격을 띤다. 어떤 경우이건 이스라엘

---

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 12:59).

42) 희년에 해방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류는 종의 신분이 전전 유통됨으로 인해 당초 자신이 빚졌던 주인과는 전연 관계없는 제3자 밑에서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안식년에 채무가 탕감된다는 것은 굳이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7년 단위마다 채권자를 주인으로 모셨던 종들은 풀려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7년이 되기 전에 채주가 종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안식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거래의 전제 조건인 종의 지위가 소멸하였으므로 제3자인 주인에게서도 풀려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매매 행위 후에 발생한 소멸사유에 소급효를 인정할지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원인무효가 되어 풀려나겠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제3자인 주인은 안식년 후에도 여전히 종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사건으로는 희년을 통한 자동 해방 제도의 취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예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3) 반면 레위기 25장 39-41절은 그 기간을 다음 희년까지로 하고 있어 양자가 모순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Jackson, 2006: 87), 각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노는 현재의 주인이 바로 직접적인 채주인가, 아니면 채권채무와 무관하게 사들인 주인인가에 따라 그 지위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두 제도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채무의 다과, 특히 자신의 기업까지 처분한 채무자인가, 아니면 단순 채무자인가에 따라 해방에 소요되는 기간이 7년 또는 49년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Chirichigno, 1993: 336).

사람들을 영구히 종으로 삼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과거 종의 신분에서 놓여난 이스라엘은 자신이 풀려나길 간절히 원했던 그 노예의 신분으로 동족을 전락시켜서는 안 되었다.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로 채노가 발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에,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이에 개입하여 채노들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다(Burnside, 2011: 22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 탕감과 노예들을 위한 희년의 선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였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칙령들 중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표현들 중의 하나인 “자유를 확립하다(to establish ‘liberation’; anduraram shakanum)”는 말은 특별히 재산을 그 소유자에게 돌린다는 말과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두 가지를 언급할 때 쓰였다(Weinfeld, 1995: 75. Burnside, 2011: 229에서 재인용).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자산의 중요성은 평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 만큼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자산은 그와 연관된 어떤 객체이다. 이런 관계는 도덕적이며 정의의 바탕 위에 있다”(Nelson, 1987: 4-5)는 말이 보여주듯 자산을 떼어놓고 정의나 자유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해방이란 노예로의 예약에 다를 아니다. 돌아갈 기업(基業)이 없는 ‘빈 손의 자유’에서는 어떤 기쁨도 기대할 수 없기에, 희년과 자산의 확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희년의 안식을 궁극의 상태로 추구하는 복지 역시 자산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로크식의 근대 자유론의 골자라면 그 전제가 되었던 원시 자연 상태에서는 분명히 의식주 역시 타인을 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자산의 결핍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쉽게 만들어 내며 심각하게 자유를 감소시키며, 온갖 다양한 유형의 착취와 남용에 허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이런 상태를 악용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하여 악을 구조화한다(이호선, 2011a: 44-45).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시민의 공간에서는 설 자리가 없었다. 여성, 아이, 소작인, 유색인종 및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고대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공화정을 표방한 체제 하에서도 자유 시민 영역 속에 그들의 존재는 없었던 것이다(Nelson, 1987: 9). 뿐만 아니라 자산이 없다는 건 삶에서의 독자



성을 영위할 상당한 생계수단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산소유자에 대한 종속을 의미한다. 자산을 인정(認定)할 때 한 개인의 인간됨이 인정된다. 아마타야 센(Amartya Sen)은 자유가 가치 있는 것은 그 자유가 많을수록 기회를 많이 갖다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개인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 자유는 외부적 제약이 없는 소극적 자유와 내부적 제약이 없는 적극적 자유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김대근, 2010: 210). 존 롤즈(John Rawls)는 주권자로서 시민은 단순히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권한과 기회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정치적 주권자로서 모든 시민들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재화(primary goods)를 소유해야 한다고 한다(권혁주, 2007: 70).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아마타야 센이나 롤즈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주의자들 역시 자산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사상가 중의 한 명인 흄(Hume)은 인간에게는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이야말로 ‘원초적 존재(original existence)’라고 하면서, 시민사회, 도덕 및 정의의 기둥들은 열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바 정의의 뿌리는 소유권에 대한 열정을 적절히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한다(Nelson, 1987: 4-5). 흄의 분석은 모든 자산을 국유화한 공산주의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대다수의 대중들이 자산에의 접근 기회가 막달당한 채 소수에게 자산이 편중되어 있는 사회일 수록 공동체의 활력을 잃고 갈등이 높아지는지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가능한 사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수록 의미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들을 향해서도 동등한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다 정교한 도덕적 의무가 내면화되어 공동체는 한층 더 조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다(이호선, 2011a: 44-5).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50년을 주기로, 즉 희년이 되면 자산에서 분리되어 있던 구성원들이 원래의 가족 단위의 자산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레위기 25:8-13)

어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타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면 복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지도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는 1) 직업을 통한 급여 소득, 2) 급여 외에 들어오는 부수적 이윤, 3) 상속,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부는 상당한 정도의 자산(substantial sum)”으로 시작된다고 한다(Barry, 2005: 189). 회년을 통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의 종으로 있거나 사회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근거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회년의 자산 회복 제도는 복지 원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자산은 자유와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다. 회년에 해방된 채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의도하셨던 자유와 그 자유의 실현의 토대를 갖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가 하는 점이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 법이 주어지던 그 때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안식년을 바라보는 첫 해의 첫 달 썸으로 올라가보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막 자신의 기업(基業)을 받아 의욕적으로 정착민으로서의 경제생활을 하려는 시기에 받은 이 법률을 많은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빛으로 인해 막 분배받은 토지를 넘기고 채노가 되기에 너무 이른 때였기 때문이다. 아직 첫 번째 회년은 물론, 첫 번째 안식년도 6년이나 남아 있는 그들에게 혹시 빛을 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땅이 넘어가더라도 50년 후에 각자 지금의 토지로 돌아온다는 말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여서 실감이 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금 공포된 법이지만 실제 시행일은 빨라야 6년이 지나야 하고, 회년에 관한 규정은 49년을 기다려야 시행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과규정이 이렇게 긴 법률을 굳이 주신 이유는 7년 후, 49년 후에 벌어질 상황이 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벌써 6년 정도만 지나도 빛을 탕감 받아야만 할 정도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생기고, 심지어 자신을 빛의 노예로 넘김으로써 당신이 주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후손들까지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에덴에서 범죄로 인해 쫓겨 난 이후 생계수단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뉘어(창 3 :18), 어떤 경제체제이건 그 속에 가시와 잡초의 뿌리가 있기 마련이어서, 정기적인 손질과 회복의 기회를 채무탕감과 회년의 해방

제도를 통해 보장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근면과 저축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적 내지 윤리적 교훈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생존의 경계선을 오가는 극도의 빈곤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의 한 가운데 경제 구조의 왜곡, 특히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의 장점은 부의 극대화에 있지만, 그 단점은 극대화된 부가 편중된다는 것이다.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산을 활용한 생산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으로 창출하는 부도 많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정된 자원이 자산 접근권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로 쏠림에 따라 점점 더 부에서 소외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Burnside, 2011: 250-51). 시장은 로또와 같아서 실제 기여한 것 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거나(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실제 기여한 것보다 낮은 보상을 받게 만든다. 소위 워킹 푸어(working poor)는 개인의 근면과 노력이 시장에서 가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세계적 투기자본가인 조지 소로스조차도 자신이 돈을 버는 시장경제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Hahnel, 2005: 149).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말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소비형 복지, 즉 급여 소득의 보전에만 집중할 때는 근본적이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Barry, 2005: 186).

자산(資産)이라는 용어 속에는 자산이 갖고 있는 속성과 문제가 잘 응축되어 있다.<sup>44)</sup> ‘産(산)’은 낳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 한마디로 자산(資産)은 자산(自産)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속설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이다. 사회 경제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50세 이하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 중 50-70퍼센트가 상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적 부의 80퍼센트는 상속이나 상속재산을 활용한데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종합하여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의 절반은 상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Hahnel, 2005: 135; Henwood, 1997: 68-9)<sup>45)</sup> 이런 자산의 속성은 시간이 지

44) 영어로는 ‘property’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한자식 표현만큼 적확(的確)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45) 이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Greenwood, D., and E. Wolff. 1992. Changes in wealth in the United States 1962-1983.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 261-88; Kotlikoff, L., and L. Summers. 1981.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4): 706-32; Gale, W., and J. K. Scholz.

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상위 1퍼센트의 사람들이 전 세계 자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기준을 10퍼센트로 확장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자산의 비율은 85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에 하위 50퍼센트의 인류는 지구상의 자산의 1퍼센트를 소유할 뿐이다(Burnside, 2011: 11, 각주57에서 재인용).<sup>46)</sup> 그럼 실제로 구약 당시의 유일한 자산인 토지의 경우 지금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지구촌 중에서도 그나마 빈부 격차가 덜한 편인 유럽연합에서 농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배분현황을 보면 토지 소유의 편중을 짐작할 수 있다. 2006년 유럽 25개 회원국들은 331억 유로를 730만 명의 농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돈의 70퍼센트는 그 중에서도 땅을 가장 많이 가진 상위 10퍼센트의 지주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Baldwin & Wyplosz, 2012:254). 영국의 경우엔 농지 소유자가 24,525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하위 10,000명은 전체 보조금의 13퍼센트를 나눠가지는 반면 보조금의 50퍼센트는 상위 8.2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0.08%에 해당하는 20명이 12.5퍼센트에 달하는 보조금을 챙긴다고 한다(Baldwin & Wyplosz, 2012:255). 다시 말해 상위 10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농지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 보조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면적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토지의 편중 실태를 알 수 있다.<sup>47)</sup> 그런데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의 시장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산의 비중에서 토지 보다 더 큰 것이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이라 할 수 있다. 금융 자산은 위에서 말한 ‘자산(自産)’의 속성을 토지보다 더 잘 보여준다. 주식 투자인구는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6퍼센트인 467만명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의 7.3퍼센트에 달하는 33만 8천명이 전체 개인보유주식의 약 73퍼센트인 243조 7천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과 저축 등을 모두 합한 소득 불평등보다 특히 주식 보유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이호선, 2011a: 24).<sup>48)</sup> 이런 각종 지표는 심각

---

1994.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145-60.

46)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가장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총생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한다. Burnside, 2011: 11.

47) 이것은 그나마 농토를 소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인 바, 대상을 농지가 아닌 전체 토지로, 소유 현황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으로 확장하면 그 편차는 더 커질 것이다.

48) 주식 자산의 편중화는 우리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

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2011년 가을에 시작되었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산’ 속에 숨어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지 못하거나 보고서도 태만하게 방치해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산기반 불평등이 소득기반 불평등보다 커지고 자산기반의 격차가 노동소득기반 격차를 악화시키거나 커지게 만드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처나 복지에 대한 접근은 현실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용창: 7). 하나님은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그 공간 이용에 관한 경제 구조 역시 정기적으로 김을 매고 가지를 치면서 독초의 뿌리를 제거해야만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음을 아셨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회년이 되면 자유와 자산이 가족 단위로 다시 묶여질 수 있도록 입법을 해 두신 것이다.

### III. 성경적 복지 원리의 적용과 타당성

#### 1. 성경에서 도출된 복지의 원리

제2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일관된 복지의 원칙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한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원리는 복지란 소속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일관하여 복지 수혜 대상은 일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복지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공동체를 통해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소속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혜 대상자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내되기도 하여야 한다. 소속감은 자존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복지의 일차적 목적은

---

인이 되고 있는데, 국민 총소득에서 화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0년 동안 선진국들 사이에서 대부분 감소하였고, 제3세계 국가들에서 IMF를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해졌다. 이에 따라 소득의 분배에 있어 비 급여소득(earned incomes)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 등 사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호선, 2011a: 24-5 이하 참조.

생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있지만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는 것 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경의 복지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자를 금하고, 안식년에는 채무를 탕감하고, 희년에는 채노에서 해방되도록 하고 있으나 채노가 되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통용되던 채무 탕감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돕으로써 빚진 자는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줌에 배려하였지만, 3년마다 구휼용 십일조를 저축하는 외에 타작한 곡식을 따로 나눠주게 하지는 않았다. 가난하다고 하여 낫을 들고 남의 밭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먹을 것 이상을 거둬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희년이 되어 자기 가족과 함께 그 자산을 회복시켜 주는 데는 앞으로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sup>49)</sup> 다만, 공동체가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대상들도 있는데, ‘고아, 과부, 객’이 그들이다. 자산에 대한 접근기회가 없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의 연계 고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공동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3년 마다 성읍에 저축하는 십일조가 그것이다. 책임은 개인 및 가족 단위로 부여된다. 성경은 채노에서 해방되거나 토지를 팔았다가 무를 경우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그 가족과 친지들이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및 가족이라는 최소 경제단위에 생계수단을 보장할 때 경제 생태계는 뿌리부터 튼실해질 것이다(이호선, 2011b: 907). 국가나 상업적 복지에 더 많이 의존하지 않고 사회가 약자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혈연적 가족 내지 이를 좀 더 확장한 이웃 공동체를 통한 경우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Mills, 2000).<sup>50)</sup>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 정부를 꼽는 견해도 있으나(김영란, 2004: 263), 국가의 후견적 기능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비정상적인 비대화와 관료 행정 조직의 권한 남용, 비용누수, 국민의 의존성 강화 등의 폐해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므로, 국가는 각 개인과 가족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 기반 자산의 접근을 통한 자기책임의 여건을 실현해 주고 자산의 불평등을 조정해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또한 이에 더하여 그는 자신의 토지에서 거둬 들인 수확물에서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명하신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자, 주는 자로 신분이 회복되기도 하였다.

50) <<http://www.jubilee-centre.org/document.php?id=30>>

세 번째로 복지는 자산 분급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가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책임을 가져오는 자유, 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산에 대한 접근 허용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 수단이다. 자원분배에서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Hartropp, 2010: 78). 물론 여기에서 분급되어야 하는 자산은 구약시대처럼 토지가 아닌 현금이나 주식과 같은 유동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복지 방식은 부가 형성된 이후에 그 결과를 조세로 재분배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이지만, 성경은 사전적, 예방적 복지를 추구한다. 성경적 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산능력을 제공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돌보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성경은 대부분의 복지 국가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계속 가난해 지도록 내버려두었다가 결국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빵조각을 던져주도록 하지 않는다. 가난의 함정에, 그것도 세대 간에 이어지는 빈곤의 굴레에 무기력하게 던져진 뒤 납세자들의 주머니에 의존하게끔 되는 상황을 미리 막자는 것이다(Burnside, 2011: 251). 사후적 복지 수단으로서 조세를 통한 분배는 각자 노동의 결과를 국가가 탈취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론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자산기반형 복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까닭은 복지수혜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이른 바, 사회적 빈곤의 원인을 통찰하고 거기에서부터 해법을 찾으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이 존재하지 않으면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새삼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빈곤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접근할 수록 복지 정책이 갖는 인간다운 삶도 한결음 더 가까워 질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이호선, 2011a: 23). 성경적 법은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생산적 수단을 대강이나마 균등하게 제공하면서도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열심히 일할 유인동기를 놓치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양 극단을 포괄하는 제3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복지란 균등한 자산에의 접근, 자기 책임 하의 생활,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절대적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는 바, 현대적 복지정책의 밑그림으로서 한 개인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다면 “균등한 출발, 치열한 삶, 안정된 노후”로 표현할 수 있다.<sup>51)</sup>

51)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의 생애 초기에는 기초적인 자산과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고, 그 이후 중기에 이르면 노동능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자기 책임으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기에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이 되면 공동체가 그 남은 삶을

## 2. 자산 복지의 현실성

### (1) 시행된 사례가 있는가.

자산복지의 목적은 부의 세습을 방지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세습을 막자는데 있다(이호선, 2011a: 28). 시장자본주의 경제가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쓰는 방법은 정부 규제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다. 반면 마르크스 적인 접근은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생산 수단에 접근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집단적 소유체제는 개인, 가족 단위의 자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유인동기를 말살함으로써 만성적인 낮은 생산성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Burnside, 2011: 250-51). 이에 반하여 성경적인 자산 분급형 복지는 개인의 복지를 전체 집단의 복지에 포괄시키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Fager, 1993: 118), ‘이 가족에 속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점유하고 이 땅으로부터 수확을 하도록 하라’는 선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Fager, 1993: 113).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산 분급을 통한 복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지금의 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미국은 남북 전쟁을 전후하여 빈곤층에 농토를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1862년 링컨 대통령은 공공토지공여법을 공포하여 미국의 최초 식민지 13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개인별로 160 에이커씩 개간하여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부여하였는데(이호선, 2011a: 29-30),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시도된 각국의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복지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2)</sup> 1945년 이후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실시된 성공적인 토지개혁이 농민들로 하여금 소작농의 경우와 달리 생산성 증대 노력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분석을 바탕으로 토지개혁을 한국 사회의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게 하는 큰 구조적 변동 요인으로 해석하는 입장(권혁주, 2007: 74) 역시 자산분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이라는 논거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

책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52) “미국의 공공토지공여법은 지금의 어떤 사회적입법보다 더 급진적이며 복지지향적이었다”(Sherraden, 1991: 191).



**(2) 의존성 문제는 해결되는가.**

복지정책의 핵심에는 가난의 원인 및 궁극적으로 복지혜택에의 의존성을 둘러싼 두 개의 중요한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복지는 어느 정도로 의존성을 만들어 내는가? 이 문제는 복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주요한 논쟁 중 하나이다. 보수주의적 비판론자들은 복지정책이 가난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내지 재진입 가능성을 낮춘다고 한다. 복지수혜 계층의 의존도를 높이고,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적 활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빈곤법(Poor Law) 개정을 위한 1832년 영국의 왕립위원회 연구보고서는 비노동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의 영향에 대하여 특히 우려하면서 구빈원(poorhouses)내에 수용된 사람들의 생활여건은 가장 빈곤한 노동자들의 생활여건보다 더 열악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있었다(Badie, 2011: 2745). 복지비판론자들에게 깔려 있는 전제는 지금의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자신들이 받는 복지수당을 종국적으로는 권리로 느끼게 되어 공동체 의존도를 높인다는 것이다(Badie, 2011: 2745). 또한 복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시민들과 기업에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기는 복지제도의 확충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건강한 경제적 성장과 성취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왜곡한다고 한다. 그러한 사고의 바탕엔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라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Sachs, 2008: 326). 이에 대하여 복지 찬성론자들은 복지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경기 후퇴시기에 실업 사태에서 보듯이 대부분 그들의 책임과는 무관하며, 복지 수급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실상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세금 공제 등과 같은 ‘은닉된’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급되는 전체 복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이다(Badie, 2011: 2745-6).<sup>53)</sup>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세금을 거둬 사후적인 복지에 쓸 경우에 주로 타당할 뿐이다. 사전에 일정한 자산을 갖춰주고 그 책임으로 인생의 중기를 보내도록 하는 이상 복지수급자의 의존성 증가나 역인센티브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산복지는 납세자들에게 의존할 사람들을 미리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지속

53) 금융위기를 맞아 거대 금융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예금자들을 위해 쓰였고, 거액의 예금자일 수록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아 간 셈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위에서 본 유럽의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이 비자경 지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기여한다. 자산복지가 갖는 사회적 활력에의 기여는 다른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균등하게 분급받는 제도는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뿐 더러 정의감을 충족하여, 설령 자신이 삶의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뒤처진다 하더라도 이에 승복하게 만든다. 정의감의 충족은 가장 좋은 사회적 승복 기제로, 사회 통합의 핵심이다(이호선, 2011a: 42-5). 정의는 공동체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조건이다. 롤즈 식으로 표현하면 이는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협력을 위하여는 공정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대중적으로 승인된 규칙과 절차에 인도되고, 구성원들은 이런 규칙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Rawls, 2003: 6). 최근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평 중의 하나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해결을 들 수 있다(Badie, 2011: 2746).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를 “특정 개인들이 가난 혹은 기본적 삶의 요소, 평생교육의 기회 등의 결핍 내지 차별의 결과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 사회에 온전한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EU Commission, 2003; Badie, 2011: 2746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하면서 각 회원국들의 행동계획 수립과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회년에서 말하는 회복의 개념이 왜 필요한지 말해 준다. 그 배제의 중심에 자산으로부터의 배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참여할 때 그 제도들을 존중한다(Procacci, 1991: 165). 성경적 이스라엘의 사회 복지 제도 하에서는 구성원들을 깊숙이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복지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그림을 그려 준다. 한계에 처한 주변부의 사람들을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사회 복지란 단지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충분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한 줌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일원로서의 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지가 되어야만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들로 인해 공동체 자신이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야말로 진정한 경제이며(Burdenski & Dunson, 1999: 99), 공동체의 유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는 실패한 복지이다(Burnside, 2011: 241).

### (3) 자원조달의 문제에 대한 답은 있는가.

복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재원의 주된 구성요소인 조세를 확보하고, 한편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복지를 논할 때 우선적으로 논해야 하는 과제이다(정지웅, 2012: 94). 우리의 복지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92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조세연구원, 2012(3): 143).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전후하여 쏟아져 나온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필요한 재원이 약 130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40퍼센트인 50조원이 조세를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나(박기백, 2013: 409), 현실은 오히려 세수 감소를 보여준다.<sup>54)</sup>

복지에 비판적인 자유주의자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과 같은 사람은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폭력, 절도, 사기 등과 같은 행위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외에 국가 행위는 더 이상 확장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개인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조세를 통해 거둬간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한다(김영기, 2011: 10). 복지를 위한 자원 조달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라 해도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후 지출성 복지의 경우엔 정치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며, 표를 얻기 위하여 복지 효용성과는 무관하게 확장될 수 있으나, 자산분급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합의되면 그에 따라 지속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낮다. 또 분급된 자산은 상당기간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부펀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sup>55)</sup> 재정적 부담이 한결 적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또한 생애 기간 중 노동능력 존속 기간 중에 지급되는 복지 지출을 가능한 줄이

54) 2013년에는 8조 2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2014년에도 4조 6천억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2013. 11.14. 자 기사. “세수부족 쫓기고 복지부채 늘리고.. ‘빛의 덩어리’에 갇힌 대한민국”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113000366>> 최종방문. 2013. 11. 18.

55) 영국, 싱가포르 등 실제 유사하게 운용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례에 관하여는 이호선, 2011a: 29-37 참조.

56) 지금의 복지수준에서도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투입되는 각종 산발적인 지원금액을 합하면 별도 예산없이도 신생아 한 명당 1,300만원씩의 생애기반자금이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호선, 2011a: 49).

고, 복지누수를 줄인 비용을 자산 분급으로 돌리게 되면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도 자산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의 원인 중 하나는 주는 쪽, 즉 납세자들이 갖는 피해의식에 있는데, 자산분급의 특징은 모든 신생아들에게 동일한 자산을 수여함으로써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불식됨은 물론이다. 부모의 자산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정의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상속에 대한 전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보다 쉽게 끌어내는데도 자산 분급의 보편적 균등성은 유용하다.

#### (4) 복지누수와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복지정책 시행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실사의 어려움이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배제되고, 복지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한 영악한 자들의 불법 소득의 원천으로 복지가 전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다. 우리의 경우 2010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가동하자 그 동안 4천억원 가량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고 한다(한국조세연구원, 2012(3): 143).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연간 신생아 약 40만명에게 각자 100만원씩 적립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전국에서 걸쳐 복지 공무원들에 의한 복지예산 횡령도 만만치 않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기 까지 복지예산 횡령은 공무원 부정행위의 단골 메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sup>57)</sup> 주는 쪽에서 떼어 먹고, 받는 쪽에서는 교묘하게 자격을 위조하여 받거나 이증으로 받는 이러한 행태는 복지가 사후적 소득보전이나 구제의 성격으로 흐르는 한 쉽게 바뀔 수 없다. 설령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일소한다 하더라도 배분과 감시에 따른 행정비용은 불필요한 복지비용을 가중시킬 뿐이다. 비용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조차 사후적 복지는 상당한 불편함을 준다. 예컨대, 영국의 연금보증부신용(pension credit)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8페이지에 이르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교육이나 건강 등으로 이런 절차를 밟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Badie, 2011: 2745). 오늘날 복지 실패의 이유 중의 하나는 과도한 중앙집중적 복지로 인해 작은 지역 공동

57) 한겨레신문 2009. 3. 13. 기사.

“허술한 복지시스템이 공무원 횡령 공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43797.html>>  
최중방문 2013.11.18.

체의 역할이 축소되는데 있다(Burnside, 2011: 241).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점점 기대게 되는 이유는 복지지원이 사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형평과 효율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느냐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분급형 복지의 경우 각 개인에게 일률적인 자산을 분급하고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다 개인의 책임 하에 넘겨주는 까닭에 이러한 수급자 선정이나 집행, 감시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된다. 여기에서 절감되는 인력 등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인들을 돕는데 투입한다면 복지의 효율과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 (5) 보편적 또는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한 답을 주는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주택보조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교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편적 복지는 정치가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표를 바라는 입장에서 특정 계층의 지지만을 바라고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지 세력을 넓히거나 적어도 반대세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위 ‘표(票)폴리즘’의 선동에 가까운 정치를 접한 경험이 있다. 자산분급 복지의 기본 정책은 생애 초기와 말기에는 보편적 복지를, 중기에는 자기 책임 하에 두고 극히 예외적인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데 있다. 모두를 위한 사후적 복지는 결국 재원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면 ‘누구의 것도 아닌 복지’로 허무하게 끝나게 되거나 전체 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 0-5세 유아의 전면 무상보육이 복지 정책으로 제시되었다가 1년도 채 안 돼 중단 논란에 빠진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 3조 5천억원에,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 약 3조 4천 6백원 등 도합 6조 9천 6백원이다.<sup>58)</sup> 이를 대한민국에서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를 약 40만명 분다면 1인당 약 17,400,000원씩 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 돈을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싱가폴의 경우

58) 연합뉴스 2013. 9. 2. 기사. “무상교육 중단 현실이 되나..정부·서울시 ‘줄다리기’”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9/02/0703000000AKR20130902160600017.HTML>>

최종방문 2013. 11. 19.

처럼 대학 진학시까지) 관리해서 원본과 이자를 본인에게 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유아원 5년 교육비로 소진되게 하는 것이 좋은가 따져 보아야 한다. 유아원 다니는 5년의 비용 보조로 한 인생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 출발기에 종자 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토록 하는 것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전자는 그 부모에게 당장의 편의를 주겠지만, 후자는 본인에게 평생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sup>59)</sup> 사후적 소비형 복지의 경우엔 선별적인 것이 낫지만, 사전적 투자형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라도 사후적인 복지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한 빈곤 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일반적 공익 정책과의 간극을 벌이고, 당초 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가난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가난과 의존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Badie, 2011: 2746).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 논란을 둘러싼 쟁점 중의 하나가 소위 낙인의 문제였다.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수급 학생들의 경우 또래에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 전면 무상 급식론자들의 논거 중 하나였다. 그 주장의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sup>60)</sup>, 복지에 낙인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 재무성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노년빈곤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약 25퍼센트는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한다(Badie, 2011: 2746).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대변하듯 위장 이혼이나 분가 등 가족해체를 불사하면서까지 수급요건을 부정하게 채우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의 경우와 바로 비교할 수는 없어도 자산복지가 갖는 장점 중의 하나로 복지 낙인의 위험이 없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복지는 그 특성상 복지낙인의 위험이란 있을 수 없다.

59) 이 금액은 무상 교육비용만 따진 것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금 기타 소모성 비용을 여기에 더하면 신생아 1인당 수여되는 고유자산은 지금의 가치로 2천만원이 훨씬 넘을 것이며, 여기에 부모가 매칭 펀드를 하도록 하고 국가가 20년 가량을 운용한다면 심리적 지지대로서의 자산의 역할은 충분하리라 본다.

60)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각 개인에 대한 생애종자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기 힘든 것은 배고픔보다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배고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수혜대상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종자돈이 국가에 의해 확실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힘이 되지 않겠는가.

#### IV. 맺는 말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시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약속의 땅에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절기의 법률들과 십일조, 채무탕감과 희년, 그리고 희년에 허락되는 자유와 자산의 결합 제도 아래 깔린 원리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은 물론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해져 가는 지구촌의 복지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제3의 길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복지는 시간적으로는 사전적인 보편적 자산 복지이다. 미국의 공공토지공여법이 보여주듯이 역사적 경험은 개인에게 생애 기반 자산을 주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복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산 복지는 자존감있는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자산 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애 복지의 모형은 균등한 생애 초기, 치열한 생애 중기, 편안한 생애 말기이며, 제3의 길로서 성경적 복지는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 보수와 진보, 복지확대론자들과 복지축소론자들의 논쟁을 초월한다. 수혜 대상자들의 의존성과 역 인센티브의 논쟁, 재원조달을 둘러싼 조세저항의 논란, 보편적 복지 구호의 정치적 남용 우려, 국가의 현금 지급성격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비효율과 부정의 문제, 복지낙인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 등이 자산복지 제도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왜 우리는 넘어지기를 기다렸다 일으켜 세워야 하는가. 희망이라는 심리적 지지대만 있다면 인간은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공동체가 주어야 할 것은 동정이 아니라 희망이다. 성경의 복지 원리는 아주 구체적인 희망을 법률로 제시한다. “나는 비록 지금 종살이를 하지만, 내 자식은 다시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가리라.” 구약의 복지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입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열 다섯 살 난 중학생 딸을 옆에 두고 자살한 그 아버지의 머리 속에 이런 희망이 있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였을 것인가. 복지 원리에 관한 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약의 설계도는 결코 구식이 아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권혁주 (2007).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3호. 67-90.
- 김대근 (2010). “Amartya Sen의 정의론의 방법과 구조.”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179-212.
- 김비환 (1998).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공동체주의 정치이론 비판-해석사회학 (Interpretative Sociology)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9-30.
- 김영기 (2011).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정의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동서사상』 제10집. 1-26.
- 김영란 (2004).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근로빈민 (working poor)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연구』 제20권. 245-273.
- 김용창 (2013).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제2호. 5-39.
- 김은홍 (2008). “선교의 통전적 이해를 통한 기독교 사회 복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46권. 173-208.
- 김의명 (2012). “복지국가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0권 제4호. 135-160.
- 박기백 (2013). “복지재원조달방안.” 『2013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409-418.
- 이호선 (2011a). “천부기본자산권으로서의 생애기반자산도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1-57.
- \_\_\_\_\_ (2011b).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정의와 시장 차원에서의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3호. 899-927.
- 정지웅 (2012). “구약성서의 토지제도에 근거한 친복지정치적 조세제도 탐색-토지가치세를 중심으로.” 『교회 사회사업』 제18권. 91-119.
- 한국조세연구원 (2012). 이슈 & 포커스 (2012.3).

### 해외문헌

#### Books

- Bernard S. Jackson (2006). *Wisdom-Laws: A Study of the Mishpatim of Exodus 21:1-22: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trand Badie et al, eds. (201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Brian Barry (2005). *Why Social Justice Matters*. Cambridge: Polity.
- Coleman, John A (1982). *An American Strategic Theology*. NJ: Paulist Press.
- David Miller (1999).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Ellen F. Davis (2008). *Scripture, Culture and Agriculture—An Agrarian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ovann Procacci (1991). “Social economy and the government of poverty.” in Graham Burchell et al,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egory S. Alexander & Eduardo M. Penalver (2010). *Property and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old Bennett (2002). *Injustice Made Legal: Deuteronomic Law and the Plight of Widows, Strangers, and Orphans in Ancient Israel*. Eerdmans Publishing.
- Henwood, D. (1997). *Wall Street: How it works and for whom*. London: Verso.
- J. Gray (1983). “Classical Liberalism, Positional Goods, and the Politicization of Poverty,” in A. Ellis and K. Kumar, eds., *Dilemmas of Liberal Democracies: Studies in Fred Hirsch’s “Social Limits to Growth”*. London: Tavistock.
- Jefferey A. Fager (1993). “Land Tenure and the Biblical Jubilee: Uncovering Hebrew Ethics through the Sociology of Knowledge”. I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Jeffrey Sachs (2008). *Common Wealth: Economics for a Crowded Planet*. 이무열 역(2009). 『봄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서울: 21세기북스.
- John Milbank (1993). *Theology and Social Theory—Beyond Secular Reason*. Oxford: Blackwell.
- John R. Nelson, JR (1987). *Liberty and Property: Political Economy and Policymaking in the New Nation, 1789–1812*.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hn Rawls (2003. 3rd ed). *Justice As Fairness –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Jonathan Burnside (2011). *God, Justic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ha T. Roth (1997. 2nd ed).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Atlanta: Scholars Press.
- Michael Sherraden (1991). *Assets and the Poor*. New York: Armonk.
- Moshe Weinfeld (1995).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Jerusalem: Magnes Press.
- Nicholas Wolterstorff (1981).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2007). 『정의와 평화가 입을출 때까지』. 서울: IVP.
- Raymond Westbrook (1995).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in K.D. Irani & Morris Silver eds.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World*. London: Greenwood Press.
- Richard Baldwin & Charles Wyplosz (2012, 4th ed.). *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London: McGraw-Hill

### Articles

Andrew Hartropp (2010). "Do we know what Economic Justice is? Nuancing our Understanding by Engaging Biblical Perspectives, Transform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olistic Mission Studies*(27)2, 75-82.

Edward Scanlon, Deborah Adams (2009). "Do Assets Affect Well-Being? Perceptions of Youth in a Matched Savings Program".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5(1), 33-46.

H. M. Burdinski & D.H. Dunson (1999). "Acquiring Economic Justice for All: An Ongoing Struggle."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 93-99.

Linda J. Skitka & Faye J. Crosby (2003). "Trends in the Social Psychological Study of Just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 286-297.

Paul Mills(2000). "The divine economy" Cambridge Papers(9)4. 이 글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음.

<<http://www.jubilee-centre.org/document.php?id=30>>

Peter Koslowski (2000). "The Limit of Shareholder Value." *Journal of Business Ethics* (27).

Robert S. Kawashima (2003). "The Jubilee year and the return of cosmic purity." *Catholic Biblical Q*.65, 370-389

Robin Hahnel (2005). "Economic Justic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37), 131-154.

Thomas Paine (1795). "Agrarian Justice." 이 글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음.

<[http://www.thomas-paine-friends.org/paine-thomas\\_agrarian-justice-1795-01.html](http://www.thomas-paine-friends.org/paine-thomas_agrarian-justice-1795-01.html)>>

## Abstract

# The Asset-based Welfare As Biblical Principles

Ho-sun LEE (Kookmin University)

The highest suicide rate and the lowest birth rat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show very well the social and economical sufferings now we are facing with. If God Himself is concerned with these tragic circumstances, we, who confess that our identities are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as His people, should struggle for solutions in response to the present situ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get the comprehensive welfare principles from the God's law given to the ancient Israelites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to verify that these could be applied to deal with our problems. The conclusion the author have obtained in this research is that the asset-based welfare system provided to the Israel community can be very effective tools to cope with breaking the poverty circles, one of the major causes to recent global socio-economic disease, and to solve the welfare dilemmas including how to reduce the beneficiaries' dependency, to get financial resources without tax resistance, to promote the social justice, and to prevent corrupt behavior in welfare administration.

Key words : Biblical welfare. asset-based welfare. jubilee. social justice. social integration.

